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12호 2022. 11. 2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4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19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공고·열람 ————— 9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9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1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5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1.2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1-2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89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5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36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82번길 70 (가좌동)	20090922	여우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7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나스로181번길 9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0-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1-1 (청라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6-5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14-29 (마전동, 해당)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해당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9-12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로 45 (오류동)	20121025	"착하고 어질다" 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3-4	인천광역시 서구 발산로5번길 12 (원당동)	20200720	발산로의 시점에서부터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3	인천광역시 서구 목향배후로 75 (원창동)	20190121	목향 목배후단지에 조성된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3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93 (원당동, 모아엘가 그랑데)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모아엘가 그랑데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31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4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59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6-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29번길 38 (가정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1-21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로 47 (오류동)	건물말소	20121025	"착하고 어질다" 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54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 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1.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II. 위치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8-7번지 외 2필지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2,093,078.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 (2006.12.1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3	17,854	393,655.4	10	6,115	180,769.7	32	11,079	190,533.2	2	660	22,352.5
	변경	43	17,854	393,924.8	10	6,115	180,769.7	32	11,079	190,802.6	2	660	22,352.5
	증감	-	-	증)269.4	-	-	-	-	-	증)269.4	-	-	-
광로	1	487	20,230.3	-	-	-	-	-	-	1	487	20,230.3	
대로	8	5,292	180,555.9	4	3,101	113,094.9	4	2,191	67,461.0	-	-	-	
중로	기정	30	11,508	188,104.2	5	2,901	66,541.8	25	8,434	119,440.2	1	173	2,122.2
	변경	30	11,508	188,373.6	5	2,901	66,541.8	25	8,434	119,709.6	1	173	2,122.2
	증감	-	-	증)269.4	-	-	-	-	-	증)269.4	-	-	-
소로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00	15	국지 도로	266	대로1-14	중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변경	중로	2	900	15 (15~18.5)	국지 도로	266	대로1-14	중로2-1	일반도로	-	인고 2016-6 (201601.1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900	중로 2-900	◦가감속차로 조성 - B = 15m→15~18.5m (증 3.5m)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②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공업용지(변경)

기 정							변 경(안)						
도 면 표 시	가 구 번 호	면 적 (m^2)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도 면 표 시	가 구 번 호	면 적 (m^2)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m^2)	면 적 (m^2)						면 적 (m^2)	면 적 (m^2)	
I	I-9	32,935.3	원창동 488	-	4,024.6	주2,3) 획지 분할 가능 (북향 복재 단지)	I	I-9	32,665.9 (감269.4)	원창동 488	-	4,024.6	주2,3) 획지 분할 가능 (북향 복재 단지)
			원창동 488-1	-	2,529.5					원창동 488-1	-	2,529.5	
			원창동 488-2	-	3,214.5					원창동 488-2	-	3,214.5	
			원창동 488-3	-	3,578.1					원창동 488-3	-	3,578.1	
			원창동 488-4	-	2,529.3					원창동 488-4	-	2,529.3	
			원창동 488-5	-	2,529.3					원창동 488-5	-	2,529.3	
			원창동 488-6	-	2,529.3					원창동 488-6	-	2,529.3	
			원창동 488-7	-	2,400.1					원창동 488-7	-	2,299.7	
			원창동 488-8	-	2,400.1					원창동 488-8	-	2,242.1	
			원창동 488-9	-	2,400.2					원창동 488-9	-	2,389.2	
			원창동 488-10	-	2,400.2					원창동 488-10	-	2,400.2	
원창동 488-11	-	2,400.1	원창동 488-11	-	2,400.1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I-9	원창동 48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 원창동 488-7 : 2,400.1㎡ → 2,299.7㎡ (감100.4㎡) - 원창동 488-8 : 2,400.1㎡ → 2,242.1㎡ (감158.0㎡) - 원창동 488-9 : 2,400.2㎡ → 2,389.2㎡ (감 11.0㎡) 	가감속차로 조성에 따른 필지 면적 감소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IV.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2119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5-4번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A-1)(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64	6,447.5	1	226.4	1	226.4	
		2	513.3	2	513.3	
		3	1,373.3	3	1,373.3	
		4	1,716.4	4	1,716.4	
		5	439.2	5	439.2	
		6	393.1	6	393.1	
		7	263.7	7	263.7	
		8	554.2	8	554.2	
		9	782.7	9-1	365.8	
				9-2	416.9	
		10	185.2	10	185.2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변경사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64	9	782.7	9-1	365.8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9-2	416.5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4,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시	2022.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2-9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1. 21.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신도시 디에트르더펠리체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3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54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2년 11월 21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2월 21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